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등〉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7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4
(2) 제정안의 구성	4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5
(4) 고려사항 요약	7
2. 정의 규정	8
3.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	10
4. 설치위원회 설립	13
5. 입학정원 범위 설정	15
6.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17

1) 예산지원	17
2) 기금의 조성	20
3)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21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23
7. 지역공공의료과정	25
8. 의무복무·의사 면허의 취소 등	27
9.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등	30
10. 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33
 [참고자료]	 3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6.
3. 회부연월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km,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km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응급환자 전원율 2.7%,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12.9%로 가장 높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전남 서부권의 경우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전국에

서 가장 많고, 전남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및 여수 및 광양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각 대학교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등).

라.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 제정안은 국립목표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명 내외로 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과정 및 의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전라남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라남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는 도서 및 벽지 지역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가 큼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의료 인력 공급, 특히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측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 있음. 최근에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수가 급감('10년 : 474명 → '25년 : 179명)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정안은 지역 내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구성

□ 제정안은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본칙(19개 조문)	
제1조(목적)	제11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조(정의)	제12조(지역공공의료과정)
제3조(설치)	제13조(검직 또는 파견 요청)
제4조(설치위원회)	제14조(의무복무)
제5조(입학정원)	제15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공공의료과정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8조(예산지원의 특례 등)	제18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제9조(지원기금의 조성)	제19조(지도·감독)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부칙(2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안은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22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200279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220047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의원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형동의원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윤종군의원
2213317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2213462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서미화의원

□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8건의 지역 의과대학 설치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제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4) 고려사항 요약

-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선 법체계적 측면에서 현재 「보건의료기본법」¹⁾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추계를 거쳐 의사의 양성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의 의대증원 조치로 인한 갈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의대 입학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또다른 의정갈등의 소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음.

- 아울러, 지역공공의료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²⁾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관련 비용이 수반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2. 정의 규정(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연합형통합대학교”를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두고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두는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연합형통합대학교”란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별 특성·교육여건,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두고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를 두는 대학을 말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연합형통합대학교를 두어 각 대학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교수·시설·예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유지하면서도 공동 브랜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³⁾

3) 최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대학 명칭 공모에서 국립목포대학교는 ‘국립전라대학교’를,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남도대학교’를 각각 대상으로 선정했음.

참고자료 1.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진행 상황 참조

- 다만, 대학 통합은 일관된 발전 방향에 따라 대학의 자원을 재배분·조정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연합형통합대학교는 실질적인 학사·행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 없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고, 법적 통합과 운영상 분리의 이중구조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여건에 따라 각 대학에 총장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2개 이상의 국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각 대학에 총장을 각각 둘 경우 통합 리더십 부재, 통합대학 내 갈등의 장기적 확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통합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의과대학 설치·타법 우선 적용(안 제3조 및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를 특정하여,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설치)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과대학(이하 “통합의과대학”이라 한다)은 지역별 인구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교사(校舍), 부속 병원,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학교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통합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 현행법령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⁴⁾,

4)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⁵⁾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는데, 2025학년도 기준 의과대학의 정원은 5,058명이고, 정원내 모집인원은 4,565명임.

□ 법이 제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의과대학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동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과 의무복무 등의 규정을 두게 됨.

□ 다만, 현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줄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어 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5)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과의 설치 등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4.17)⁶⁾에 따라 중장기적 수급추계를 거쳐 양성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상국립대학교는 기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합의 등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주대학교는 서남의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예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과대학을 특별법으로 예외적 설립하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마다 특별법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6)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설치위원회 설립(안 제4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통합의과대학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정원이나 부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4조(설치위원회) ① 통합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의과대학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의과대학의 부지 조성 및 그 명칭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사항 5. 통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통합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되, 과반수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설치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촉·해촉 및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의과대학 설치를 둘러싼 여건, 실제 설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의과대학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특정 단과대학(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는 것은 대학 간·타 학과 등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설치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설치관계법령에 따라 법률에 직접 설치근거를 두기보다 대통령령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의과대학 설치 이후 지속운영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존속기한을 명시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5. 입학정원 범위 설정(안 제5조)

(1) 제정안의 요지

- ☐ 제정안은 통합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200명 내외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5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통합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2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검토의견

- ☐ 제정안에 따를 때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범으로 확보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2024년 3월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각 의과대학의 정원이 배정되었음.⁷⁾ 이러한 의대 정원 증원 조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의정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의료공백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7) 참고자료 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통합의과대학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증가시켜 또다른 의정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의사의 정원은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특정 지역·대학의 의과대학 정원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1) 예산지원(안 제8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가 통합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8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내용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⁸⁾,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이 필요하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⁹⁾,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

8)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

비·연구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실제 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속병원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속병원은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내과, 외과 등 8개과의 진료과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대학병원의 요건 관련 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이러한 지원규정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5.4.17)¹⁰⁾에 따라 의사인력은 별도 수급추계기구에서 중장기 수급 추계를 거쳐 양성 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의대 신설이 결정되면, 정부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별도 법령을 통해 예산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10)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조성(안 제9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9조(지원기금의 조성) ①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세액 공제 및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통합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지원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을 뿐, 조성된 기금의 구체적 용도 및 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나, 위임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기금 조성을 규정한 타 법의 체계를 참고했을 때, 용도에 대한 규정을 하거나 혹은 용도에 대한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3)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0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가가 통합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통합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발명진흥법」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12. (생략)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국가가 통합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다만,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국·공유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¹²⁾ 국·공유재산의 양여는 특정한 경우¹³⁾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특례(무상 양여, 대부, 사용허가 등) 적용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해 특례(무상 양여, 대부, 사용허가 등)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

12)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안 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의 장 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이 통합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1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목포대학교의 장 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통합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합의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¹⁴⁾와 인천대학교¹⁵⁾에서도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과대학운동을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이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1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 지역공공의료과정(안 제1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이 통합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한 비율을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입학시키도록 하고, 공공의료과정에는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2조(지역 공공의료과정) 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통합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이하 “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료과정에는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권역의 도서·벽지 등 지리적 특성과 전문병원·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제공체계, 산업 환경 및 이와 관련된 사고 등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전라남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육성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의료 관련 과목과정과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 다만,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별도 법률 신설을 검토하였으며,¹⁶⁾

관련 법률안이 발의¹⁷⁾되어 최근(2025. 11. 18)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도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로서, 전국에 걸쳐 지역의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유사 과정을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최대한 지원”」, 2025.10.10.

17)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 2200772,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 2208008,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21358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8. 의무복무·의사 면허의 취소 등(안 제14조, 제18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10년의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4조(의무복무) ① 통합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의무복무 대상자”라 한다)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라남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또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의무복무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통합의과대학의 수업연수를 일반적인 의과대학과 같이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총 6년¹⁸⁾으로 보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학비지원기간의 약 1.7배 수준임.¹⁹⁾ 이는 학비지원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을 1.5배~2.5배 사이로 규정한 사관학교(2.5배), 경찰대학(1.5배), 한국농수산대학(2배) 등과 유사한 수준임.

[의무복무기간 현황]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육/해/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경찰대학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양성	육군 장교양성	군 간호장교양성	경찰간부양성	농어업인력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학사학위	학사학위(법학/행정학)	전문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18)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19) 안 제16조에서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무복무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6②③ 및 §7①			법 §10①	법 §9①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5①			령 §23등 ²⁰⁾	령 §12② ²¹⁾

2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2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등(안 제15조, 제16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과 의무 복무 종료 후 우선 채용 등 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등의 지원 및 그 중단과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5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의료과정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6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자퇴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다른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한 사람 3.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에 따를 때, 통합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 입학생은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공공의료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의무복무 의사가 의무복무가 종료된 후 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센티브로 보임.
- 다만, 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위해 국가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채용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부담주체(전라남도 외 지역을 포함한 국가)와 수익자(전라남도 지역)가 달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보건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업이 정지된 경우 학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무복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임.

- 참고로, 학비반납과 관련하여 경찰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도 제정안과 그 요건이나 범위에는 일부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학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음.

[학비 반납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학비 반납 사유
사관학교	· 별도 규정 없음. - 다만, 입학과 동시 군적에 편입, 대부분 의무복무 이행 -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이나 전학 금지
경찰대학	·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무복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학업 중단 시 반납 의무는 없음(단,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금지)
한국 농수산대학	· 의무복무 불이행 및 중도 퇴학, 제적처분 받은 경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 이행) ③ 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교육부는 학생이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자퇴 또는 퇴학 외에 대학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되는 경우가 있어, “자퇴하거나 퇴학 등 제적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중도탈락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제정안 부칙에 대한 검토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의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과 제2조의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준비행위는 통합의과대학의 설치 등을 위한 관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부칙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통합의과대학의 설치, 입학정원 산정, 학생의 모집, 평가·인증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교육부는 제2조의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본문에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칙 제2조의 평가·인증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22)에 따른 평가·인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평가·인증의 근거

2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규정을 본문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8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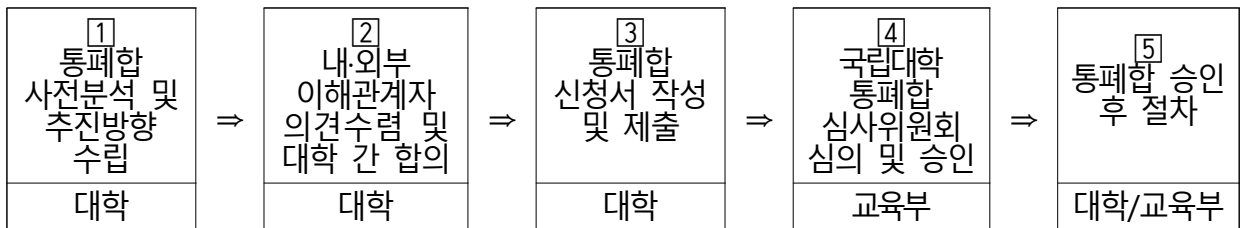
참고 1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진행 상황

□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신청 개요

- (목적) 의과대학 정원 확보를 통해 통합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초일류·초글로벌 지역 거점 대학으로의 발전 등
- (통합대학명/출범시기) ^{가칭}국립한국제일대학교 / 2027. 3. 1.

< 통합 추진 절차 >



□ 통합 관련 주요 진행 경과

- ('24.12.31.)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 통합대학 교명 등 의견수렴 미비, 대학 통합 거버넌스 및 학사구조 개편 미비 등
- ('25.1.~9.) 교육부, 보완 필요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 ('25.9.19.)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신청서 보완 제출
- ('25.10.~11.)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제1~4차 회의

□ 통합 추진 현황 : 통폐합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까지 진행

- 강원대-강릉원주대의 '1도 1국립대' 모델을 참고하여 현행 법령 내에서 '느슨한 통합'을 위한 계획 마련 중
- 거버넌스 개편, 캠퍼스 특성화 및 학사구조 개편 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안* 마련 및 대학 간 이견 조정 필요

* (예시) 교명, 통합대학 본부 위치, 학과·교육과정 변경, 통합대학 규정 제·개정 등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참고 3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제5조제1항 관련)

학생 정원 (편제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교원 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수익용 기본재산(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참고 4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학교수	정 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참고 5

지역별 의대 설치 현황(2025년 기준)

연번	권역	지역	설립	학교명	정원	비고
1	수도권	서울	국립대 법인	서울대학교	135	
2	수도권	서울	사립	가톨릭대학교	93	
3	수도권	서울	사립	경희대학교	110	
4	수도권	서울	사립	고려대학교	106	
5	수도권	서울	사립	연세대학교	110	
6	수도권	서울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76	
7	수도권	서울	사립	중앙대학교	86	
8	수도권	서울	사립	한양대학교	110	
9	수도권	경기	사립	성균관대학교	120	
10	수도권	경기	사립	아주대학교	120	
11	수도권	경기	사립	차의과대	80	의전원
12	수도권	인천	사립	가천대학교	130	
13	수도권	인천	사립	인하대학교	120	
14	비수도권	강원	국립	강원대학교	132	
15	비수도권	경남	국립	경상국립대학교	200	
16	비수도권	광주	국립	전남대학교	200	
17	비수도권	대구	국립	경북대학교	200	
18	비수도권	대전	국립	충남대학교	200	
19	비수도권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200	
20	비수도권	전북	국립	전북대학교	200	
21	비수도권	제주	국립	제주대학교	100	

연 번	권역	지역	설 립	학 교 명	정 원	비 고
22	비수도권	충북	국립	충북대학교	200	
23	비수도권	충북	사립	건국대(충주)	100	
24	비수도권	강원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100	
25	비수도권	강원	사립	연세대학교 분교	100	
26	비수도권	강원	사립	한림대학교	100	
27	비수도권	부산	사립	인제대학교	100	
28	비수도권	대구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80	
29	비수도권	경북	사립	동국대학교 분교	120	
30	비수도권	대구	사립	영남대학교	120	
31	비수도권	광주	사립	조선대학교	150	
32	비수도권	대구	사립	계명대학교	120	
33	비수도권	대전	사립	건양대학교	100	
34	비수도권	대전	사립	을지대학교	100	
35	비수도권	부산	사립	고신대학교	100	
36	비수도권	부산	사립	동아대학교	100	
37	비수도권	울산	사립	울산대학교	120	
38	비수도권	전북	사립	원광대학교	150	
39	비수도권	충남	사립	단국대학교	120	
40	비수도권	충남	사립	순천향대학교	150	
소계(40교)					5,058	